

A Comparative Study on the Safety Education of Business Sites of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Four Major Chemical Compounds in Korea

국내 4대 화학물질 관련 법률 사업장 안전교육 의무사항 비교

- 화관법, 산안법, 고압법, 위안법 -

Writer

정 엠 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선임연구원,

박 희 준

리차드컨설팅 책임연구원

Contents

I. 개요

II. 법령별 안전교육

1. 화학물질관리법

2. 산업안전보건법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4. 위험물안전관리법

III. 법령별 안전교육 의무사항 비교

IV. 산업계 대응방안

참고자료

※ 54쪽부터 62쪽까지 기재되는 '국내 4대 화학물질 관련 법률 사업장 안전교육 의무사항 비교'에 관한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문 전재합니다.

I. 개요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장의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다양한 법률을 통해 근로자 및 관리자의 의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 목적 :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 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

- 규제대상범위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 주무부처 : 환경부(제정 : 2013년 6월 4일, 시행 : 2015년 1월 1일)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 목적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사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

- 규제대상범위 : 모든 사업장

- 주무부처 : 고용노동부(제정 : 1981년 12월 31일, 시행 : 1982년 7월 1일)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압법)

- 목적 :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
- 규제대상범위 : 고압가스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
-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 1973년 2월 7일, 시행 : 1973년 9월 1일)

안법)

- 목적 :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
 - 규제대상범위 : 위험물 취급 사업장
 - 주무부처 : 국민안전처 (제정 : 2003년 5월 29일, 시행 : 2004년 5월 30일)
- 사업장 안전관리 법령들은 주무부처와 안전교육의 대상, 시기, 교육과정, 교육기관 등이 달라 산업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위

본 분석보고서에서는 사업장

안전관리 법령별 안전교육 의무사항을 비교분석하여 사업장에서의 안전교육 필수 관리 규정과 대응방안을 안내하도록 한다.

II. 법령별 안전교육

1. 화학물질관리법

(1) 개요

○ 교육 목적 : 안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화학사고 발생 시 효과적 사고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 피해 최소화

[표 1] 화학법 안전교육 대상 및 교육시간

구분	교육대상자	시간/주기	교육주관 기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기술인력	16시간/2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단 온라인 교육은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단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은 8시간/2년)		
	취급담당자	8시간/2년	
	운반자	2시간/1년	
기타교육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교육	32시간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자격취득과정	16시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장외평가서·위해계획서 작성자(전문교육)		화학물질안전원

*교육기관 :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환경부장관이 전문성을 인정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

[표 2] 화학법 유해화학물질 자격취득 대상자 교육과정

구분	교육대상	이수방법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하고자 하는 자 중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교육 이수 없이 관리자 선임 가능
자격증이 없는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하고자 하는 자 중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5호~제7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32시간 집합교육)

[출처] 환경부, 2016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이수안내서

[표 3] 화관법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교육과정

구분	교육대상	이수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법 제32조)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및 점검원 (단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은 8시간 이상/2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16시간 이상 집합교육)
기술 인력 (법 제28조 제2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기술인력	

[출처] 환경부, 2016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이수안내서

[표 4]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교육과정

구분	교육대상	이수방법
취급담당자(영 제13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자 중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아래 방법 중 택 1) - 집합 16시간 - 집합 8시간+온라인 8시간 - 방문 16시간
	수급인, 수급인이 고용한 자로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장외영향평가서 및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자	

[출처] 환경부, 2016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이수안내서

[표 5]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과정

구분	교육대상	이수방법
운반자(법 제13조 제5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운반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집합교육)

[출처] 환경부, 2016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이수안내서

○ **관련 근거** : 「화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2)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과정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취득 대상자**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자나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술인력, 종사자 및 취급량에 따른 관리자를 추가 선임한다.

○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16시간 이상/2년)

○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16시간 이상/2년)**

온라인 교육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http://edunics.me.go.kr>)에서 이수 가능하고,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같은 연도에 모두 이수해야만 한다.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운반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종사자(2시간 이상/년)**

사업장 자체 온라인 교육 시 화학물질안전원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16시간)**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및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자 포함)는 기술인력 등의 관리자과정 또는 취급담당자 교육을 16시간 이상/2년 이수해야 한다.

[표 6]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종사자 교육과정

구분	교육대상	이수방법
종사자 교육 (법 제33조 제3항)	해당사업장 모든 종사자 (단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	아래 방법 중 택 1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체교육 - 사업장 자체 온라인교육 -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주관한 화학사고 대비·대응 훈련 참가

[출처] 환경부, 2016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이수안내서

[표 7] 화관법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과정

구분	교육대상	이수방법
작성자 교육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장외영향평가서 및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자	화학물질안전원(집합교육)

[출처] 환경부, 2016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이수안내서

[표 8] 화관법 안전교육 관련 기관 안내

기관명	교육문의	홈페이지
화학물질안전원	042-605-7073, 7074, 7077, 7086	http://edunics.me.go.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602~8	http://edu.kcma.or.kr

(3)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

○ 교육기관

: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환경부 장관이 안전교육의 전문성을 인정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

- 화학물질안전원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30일 이상 수료한 전문가 3명 이상 보유
- 동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교육장 보유
- 교육과정 30일 이상 수료한 전문가 외에 화학물질안전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보유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 교육내용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취득 대상자(영 제1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 「화관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및 화학사고 시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사항, 화

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화학사고 시 대피·대응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보호구, 방제장비 등 선정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화관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유해화학물질 유해성 및 분류·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형태별 준수사항 및 취급

기준에 관한 사항, 장외영향 평가와 안전성 향상 방안에 관한 사항, 화학사고 시 대피·대응방법 및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에 관한 사항,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화관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유해화학물질 유해성 및 분류·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이동, 취급, 보관·저장 시 준수사항 및 취급기준에 관한 사항, 화학사고 시 대피·대응방법 및 개인보호

구 착용 실습에 관한 사항,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화관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표시 및 운반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이동 시 준수사항, 화학사고 시 대피·대응방법 및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에 관한 사항,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

－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종사자

「화관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화학사고 시 대피·대응방법 및 사고 시 행동

요령에 관한 사항,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1) 개요

○ **교육 목적** : 사업장 내 작업자의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작업능력의 육성 및 향상으로 작업자의 사소한 무지로 인한 중대재해와 막대한 산업손실 발생 최소화

○ **관련 근거** : 「산안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표 9] 산안법 안전교육 대상 및 교육시간

구분	교육대상자	시간/주기	교육주관 기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3시간 이상/매 분기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3시간 이상/매 분기	
	판매업무로 직접 종사 근로자	3시간 이상/매 분기	
	그 외 근로자	6시간 이상/매 분기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16시간 이상/1년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별표8의 2 제1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8의 2 제1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해 실시)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8

[표 10] 산안법 안전교육 관련 기관 안내

기관명	교육문의	홈페이지
안전보건공단	1644-2275	http://www.kosha.or.kr/kosha-edu/
(사)대한산업안전협회	02-860-7057	http://www.dutycenter.net:444/index.go
(사)대한산업보건협회	02-522-0933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02-518-1501~2	
(사)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02-2068-0390	

(2)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

○ 교육기관

: 안전보건공단,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 기관 내 기본인력은 3명(총괄책임자 1명, 강사 2명)
- 기본인력의 관련 분야는 산업안전분야(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산업보건분야(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로 범위를 둠
- 사무실 : 연면적 30㎡ 이상
- 강의실 : 연면적 120㎡ 이상, 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추어 것

○ 교육내용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제33조 제1항 관련)
- 「산안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제33조 제1항 관련)

「산안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 안전작업방법 및 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제33조 제1항 관련)

「산안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제92조의 6 제1항 관련)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 개요

○ 교육 목적 : 사업장 내 취급하는 고압가스 저장소시설과 그 저장소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에 대해 작업자의 교육·훈련을 통해 가스안전 사고 예방 최소화

○ 관련 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2)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

[표 11] 고압법 안전교육 대상 및 교육시간

구분	교육대상자	시간/주기	교육주관 기관
전문교육	1. 안전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원(2, 5 및 6의 자는 제외한다)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후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제외)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
	2.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6의 자는 제외한다)		
	3. 운반책임자		
	4.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5. 독성가스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원(6의 자는 제외한다)		
	6.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 중 독성가스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특별교육	1. 운반차량운전자	신규 종사 시 1회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
	2.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3.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		
	4.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양성교육	1. 일반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
	2. 냉동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3. 판매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4. 사용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5. 운반책임자가 되려는 사람		

[출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1조 1항, 별표31

[표 12] 고압법 안전교육 관련 기관 안내

기관명	교육문의	홈페이지
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안전교육원)	041-629-0500	http://www.kgs.or.kr/edu

[그림 1] 고압법 안전교육 사이트



○ **교육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

○ **교육내용**

-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그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그 외 가스안전교육원 사이트 내에 교육 기간별 내용 공지

4. 위험물안전관리법

(1) 개요

○ **교육 목적** : 사업장 내 취급하는 위험물의 안전관리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위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

○ **관련 근거** : 「위안법」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8조

(2)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

○ **교육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협회

○ **교육내용**
-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제4류 위험물의 품명별 일반성질, 화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연소 및 소화에 관한 기초이론, 모든 위험물의 유별 공통성질과 화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위험물안전관리 법령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계된 법령
-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 작동법, 위험물운송에 관한 안전기준, 연소 및 소화에 관한 기초이론, 모든 위험물의 유별 공통성질과 화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위험물안전관리 법령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계된 법령
- **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은 강습교육과 다르게 실습 형태로 나누어져 있으며, 협회 사이트를 통해 매년 교육내용이 공지된다.

Ⅲ. 법령별 안전교육 의무사항 비교(표 15) 참조)

Ⅳ. 산업계 대응방안

○ 법령별 안전교육 중복 이수 고려사항

산안법은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시 화학물질관리법 상 종사자 교육으로 인정한다.

단, 교육내용이 화학사고 위험성 대비·대응 등을 만족하면 화관법상 종사자 안전교육(2시간/년)으로 인정한다.

고압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9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4에 따라

[표 13] 위안법 안전교육 대상 및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시기	교육기관
강습교육	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24시간	신규종사 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협회
	위험물운송자가 되고자 하는 자	16시간		
실무교육	안전관리자	8시간 이내	신규종사 후 2년마다 1회	
	위험물운송자	8시간 이내	신규종사 후 3년마다 1회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8시간 이내	1.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2.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회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4

[표 14] 위안법 안전교육 관련 기관 안내

기관명	교육문의	홈페이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031-289-2776	http://www.kfi.or.kr
한국소방안전협회	1899-4819	http://www.kfsa.or.kr

[표 15] 법령별 안전교육 의무사항 비교

항목	화관법	산안법	고압법	위안법
교육대상	화학물질 취급자	사업장 종사자	고압가스 취급자	위험물 취급자
교육신청방법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신청 (edu.kcma.or.kr)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내 신청 (edunics.me.go.kr)	안전보건공단 교육원에서 해당 신청 (www.dutycenter.net:444/index.go)	한국가스안전공사 내 가스안전교육원 신청 (www.kgs.or.kr/edu)	한국소방안전협회 내 위험물교육 신청 (www.kfi.or.kr)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내 위험물실무자 교육신청 (www.kfsa.or.kr)
교육기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관리협회	-안전보건공단 -위탁기관(주요 4개)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사)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등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교육이수 유효기간	-취급자 교육(2년) -종사자 교육(2년)	-사무직 종사(매분기) -판매업무 종사(매분기)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1년)	-안전관리책임자(3년) -운반책임자(3년) -안전관리원(3년)	-안전관리자(2년) -위험물운송자(3년) -탱크시험자 기술인력(2년)
주요 교육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화학사고 시 대피·대응방법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실습에 관한 사항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 안전작업방법 및 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안전관리자 강습 및 실무교육 -운송자 강습 및 실무교육
과태료 및 범칙금 (안전교육 미이수 시)	제64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차 위반 : 180만원, 2차 위반 : 240만원, 3차 이상 위반 : 300만원)	제31조 1항 의거 안전교육 미 실시 근로자 1인당 과태료 5만원 부과(해당근로자 수×50,000원×미 실시 분기)(1차 위반 : 3만원/인, 2차 위반 : 5만원/인, 3차 이상 위반 : 10만원/인)	제23조, 제42조, 규칙 제51조 의거 안전교육 미 이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고압법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위안법은 안전관리자 강습, 실무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 실무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해 어느 하나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나머지 강습, 교육과정에

서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의 실무교육시간 중 일부(4시간 이내)를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가 사이버 교육방법으로 수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면 해당된다.

○ 법령별 안전교육 이수 제외 사항

산안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법적 선임의무는 면제되나 산안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PW]